

 신안산대학교	연계교육운영위원회 규정	규정번호	4-1-19
		제정일자	2001.03.01
		개정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교무처

제1조(목적) 교육과정의 연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계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9.5.20 개정>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2009.5.20 개정>

② 위원장은 회무(會務)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연계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입안에 관한 사항
3. 연계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계협약체결 실업계 고등학교 우선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5. 연계교육과정 개발 및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6. 본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